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도입추진의 문제점



홍 순 찬
본회 기획조사부 이사

1. 경 위

금년 들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배합사료 가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동 제도의 도입은 지난 2013년 초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에서 검토가 시작되어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보고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서 축산생산자단체에서 발의되어 지난 수년간 논의되었던 “사료가격안정기금” 제도 도입 추진과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배합사료 가격제도의 변화

우리나라 배합사료 가격제도의 변화를

보면 사료산업이 산업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1960년대 초반부터 1972년 8월까지는 시·도지사(지자체)가 가격을 조정하여오다가 1972년 9월부터는 농수산부장관이 대표적인 산란용 사료가격을 경제기획원과 사전협의하고 시·도지사가 동 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1975년 10월까지 시행되었다.

이후 약 1년간 자유가격판매제가 시행되다가 1976년 1월부터는 3가지(산란초기, 씨돼지, 착유1호) 대표 품목에 대해 경제기획원과 사전협의하여 조정하였으며, 1977년 9월부터 1980년 6월까지는 경제기획원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품목별 최고가격을 지정고시하였으며 1980년 7월부터 현재와 같은 배합사료가격 자율화가 시작되었다.

1980년 7월 사료가격 자율화의 취지는

사료품질의 양부(良否)가 결국 축산물 생산량 증대와 직결되고 이는 결국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즉 유통구조상 계절별·사육형태별로 다양한 형태로 요구되는 사료가 제조업자의 자율가격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었으나 정부의 가격지정으로 사료품질이 지정가격 범위에서 제약을 받아 자발적인 품질향상이나 새로운 자원개발 및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3. 가격표시제 도입목적은 이미 충분히 확보

가격표시제 도입의 긍정/부정의 효과 이전에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은 이 제도의 필요성일 것이다. 동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의 구체적인 실시(안)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사료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해당품목의 영양성분 및 가격(공장도가격 등)을 표시토록 함으로써 농가가 각 제조업체별 영양성분 및 가격을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가격·성분 비교표를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외상거래시 고금리 관행의 개선 등 가격의 투명성과 농가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농가별 맞춤형 제품선택을 유도하는 한편 저가사료 개발 등 가격경쟁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축산·사료산업의 시장상황은 이미 가격의 투명성은 물론 농가의 알권리가 이미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역별 축산물 브랜드화에 따른 사료의 공동구매, 축산농가의 전·기업화가 진행됨에 따른 농가의 구매교섭력 확대, 사료비 절감 및 농장(가)별 생산성 향상을 위한 OEM사료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이들 사료의 공급가격은 해당 사료기업의 원료가격, 환율 등이 반영되어 매달 변동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우리나라의 그 어느 제품보다 거래가격의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양규모의 확대에 따라 축산농가의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농협의 사료가격 선도 기능, 민간업체간의 판매경쟁의 심화로 1개 농가(장)에 4~5개 이상의 사료기업이 판매를 위해 공급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농가에서는 농협을 포함한 여러 민간업체의 가격조건표까지 파악하고 실정으로 기업별 사료가격과 성분에 대한 알권리 역시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공해라 할 정도로 충분히 제공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가격표시제를 도입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4.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도입의 문제점

배합사료와는 달리 대형유통업체 등 일

정한 판매장을 경유해 다중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식품 등의 경우도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2010년 7월 1일부터 가격표시제가 폐지되었음에도 제조업체와 농가별 거래조건에 따른 개별계약에 의해 직접·공급되는 배합사료에 대한 가격표시제 도입은 표시행위 자체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 뿐 만 아니라 기업의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경영활동 나아가 정부의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규제개선이라는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표시가격의 설정과 표시방법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배합사료의 거래가격은 제품의 특성(영양 성분·가공형태·기능성 여부 등)과 농가별 거래조건(공급량·여신기간·운송거리·OEM 등 구매방법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반영되어 농가별 개별계약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농가별로 각기 달리 적용되는 가격을 표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표시가격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제조업체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가격을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표시가격 자체가 실질 거래가격이 아니므로 법률적으로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소지가 있으며 나아가 제조업체와 축산농가의 불신과 분쟁만을 가져오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우려된다.

정부에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동 배합사료 가격표시를 시행한다고 하나 동 법률에 의하면 “최종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실질 판매가격”만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배합사료는 판매업자가 아닌 제조업자가 직접 농가에 공급(일부 대리점 등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도 있으나 이 역시 제조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장별로 판매가격이 상이(相異)하며 실질거래 가격의 표시가 불가능하므로 동 법률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더불어 표시가격과 실질공급 가격과의 괴리, 농가별 공급가격 차이 등에 따른 농가와 사료기업간의 분쟁/민원 발생은 사료기업의 경영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것이며, 이와 같은 공급자와 소비자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비용발생과 가격표시제 이행에 따른 행정비용(홈페이지 구축, 인원보강 등)역시 사료가격에 전가되어 공급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가장 커다란 문제로 예견되는 점은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문제이다. 시장 경쟁이 극히 치열한 우리나라 사료시장 상황에서 사료업체는 경쟁사와의 판매가격 비교를 통한 판매저하를 우려해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서 사료의 품질·위생 안전성 보다는 판매경쟁 치중해 저가사료 생산에 주력할 것이며 이로 인한 영향은 우리

사료산업 및 축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농가의 사육규모 확대에 따라 농장별 사육환경 등에 따른 맞춤형 사료 공급이 확대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저가사료 위주 생산·판매전략에 따라 단위농장별로 가축의 성장단계에 따른 사육프로그램 개발 노력 위축 등 정부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농장별 맞춤형 사료 생산이 퇴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나아가 현재 사료기업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항질병, 특정 영양성분의 기능성 사료개발,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료 가공 기술의 개발 등 사료산업 전반에 걸친 생산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저하되어 사료산업의 전체적인 하향평준화가 우려된다 하겠다.

다음은 사료기업의 대 농민서비스가 축소될 뿐 아니라 사료산업의 저비용구조 전환 등 정부의 축산업 선진화 시책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료의 저가공급 우선 기조에 의한 추가적인 비용발생 회피로 사료공급 이외의 농장경영 전반에 걸친 사료기업의 농장 경영컨설팅 축소에다 농장에 대한 수의 및 방역관련 대 농민서비스 축소는 불가피하다.

사료기업 내적으로는 사료의 저비용 전

환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료자원의 개발, 사료원료의 다양화 및 수입국의 다변화 등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나 저가사료 위주의 판매경쟁이 심화되는 경우 품질 및 생산비용의 변동에 따른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한 수동적인 경영마인드가 일반화 되어 결국은 산업전반의 고효율 저비용 구조 전환에 악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료가격고시제(사료가격안정기금 운영에 따른 분기별 가격등락을 발표)의 부정적 영향, 즉 농가(장)의 입장에서는 타 농가와와의 사료구입가격 차이가 없어짐에 따른 사료비 절감노력(선급금 및 현금거래 등 농장경영 합리화 등) 저하, 사료기업에서는 새로운 사료자원 개발 등을 통한 경제적인 사료 생산 노력의 감소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와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배합사료의 가격표시제 도입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며, 축산농가의 필요를 수용하여 도입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강제적 사항이 아닌 사료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장·유도하는 것이 축산업과 사료산업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